

베트남 통관환경 동향 및 FTA 활용방안

명재호 청술관세법인 관세사



Viet Nam





01. 개요

베트남은 매년 약 5~6%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인구가 약 9천만에 달해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시장이다. 관련 지표상으로도 '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교역규모가 40배 성장하였고, 한국은 베트남에 4,110개 프로젝트, 372억불을 투자하여 '14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의 제1투자국으로 등극하였으며, 반면 베트남은 2015년 5월 기준 한국의 4위 교역국이자, 5위의 투자대상국으로 아세안 회원국 중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역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5.05 한-아세안 FTA와는 별도로 개방수위를 대폭 상향한 한-베트남 FTA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일-베트남 EPA가 체결('09.10)되어 그 동안 우리 주요 수출품목들이 일본 경쟁 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하였으나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베트남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무상 빈번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의 통관제도와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수출입통관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02. 베트남의 관세제도

① 베트남의 통관행정 조직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베트남의 정부기관은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으로 관세총국의 기능은 통관절차 수행, 수출입화물의 검사·감독, 밀수조사, 단속 등 기타 세관 업무의 집행 등이다. 베트남 관세 총국의 조직은 본청(해관총국), 성급세관(해관국), 지역세관(해관지국) 등 3단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3개 직할시 및 성 가운데 31개 직할시 및 성에 성급세관(해관국)이 설치되어 있다. 다만, 각 성급세관의 경우 중앙의 재무부와 본청의 강한 지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세관 직원 역시 성급세관별 자율선발체제로 세관원의 재량과 권한이 막강하여 신속통관 지연, 일관성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② 베트남의 관세율

1999년 1월 1일 베트남은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여, 기존의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 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관세율 체계〉

구분	내용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 및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MFN 협정을 체결한 미국, 일본, EU 등 총 163개국에 대해 적용하는 특혜관세
특별특혜 관세율	베트남과 특별 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적용하는 관세로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간 실시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등이 이에 해당

③ 베트남의 비관세 장벽

베트남의 비관세 장벽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자동수입허가, 안전인증서, 라벨링, 표준규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수입허가 및 안전인증서는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라벨링 및 표준규격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베트남의 비관세 장벽〉

구분	내용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산업무역부에서 지정하는 화장품, 철강제품 등 특정 품목은 물품의 하역 전 자동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안전인증서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이 필요함
라벨링(Labeling)	모든 수입물품은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포장용기에 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정보를 기재할 것
표준규격	품목별 표준 규격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기준에 맞추어 표준규격이나 제품설명을 작성해야 함

① 자동수입허가(AIL) 신청

AIL의 신청은 품목별로 하여야 하고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대금송금 관련서류 및 선하증권 등 필요서류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우편 접수하면 통상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AIL(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이 발급된다.

② 안전인증서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관련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 위원회(STAMEQ, 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라벨링(Labeling)

수입재화의 라벨은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내용에 추가하거나, 제조자 라벨 옆에 수입업체의 라벨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하며 상품명, 수입자의 상호·주소, 수량정보, 성분정보, 원산지 등 8대 법정항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표준규격

특정제품의 표준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제공 받기도 하고,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관세면제제도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근거로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용 공장 설비 기계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에 면세수입을 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베트남 투자기획부로부터 투자허가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수입계획을 각 성의 투자기획부(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입되는 설비 기계류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여 주고 있다.

“투자용 공장 설비 기계류” 이외에 일반적인 면세규정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으며, 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재수입용 일시 수출물품,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에 대하여도 관세부과가 면제된다.

03. 베트남의 통관절차

① 수입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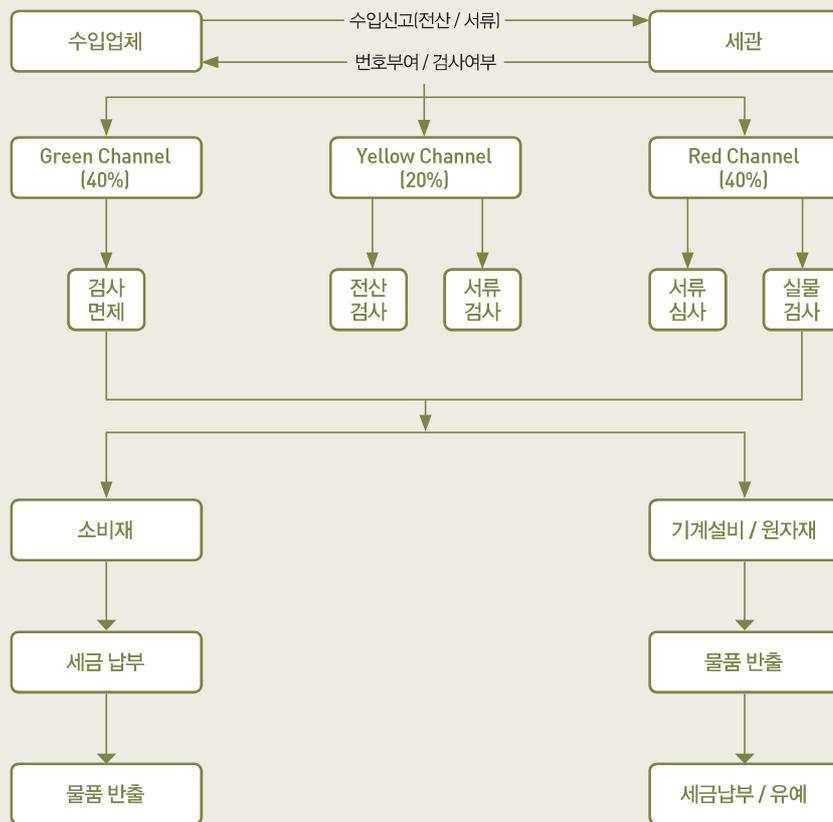
베트남의 수입통관은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① 수입신고 → ② 세관심사·검사 → ③ 관세납부 → ④ 물품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통상 5~7일 정도 소요된다.

수입신고는 전산과 서류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주는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나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로 물류업체 등을 통해 통관하거나 업체에 자체통관 전담직원을 두어 통관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구분	서류
필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입계약서(Sales Contract)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 수입허가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허가증(I/L) - 쿼터대상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증명서 - 면세제품인 경우 면세신청서

● 베트남의 수입통관 절차



* 출처: 베트남 통관환경 보고 (주 베트남 관세관)

수입신고 후 세관검사는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중위험), Red Channel(고위험) 3가지 중 한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 되는데 저위험물품(Green Channel)에 대해서는 세관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모두 면제되고, 중간위험물품 (Yellow Channel)에 대해서는 물품검사만 면제, 고위험물품(Red Channel)에 대해서는 세관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모두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세관검사시 Channel별 필요절차〉

Channel 분류		필요 심사 절차
Green Channel		전산신고만으로 신고수리 가능 - 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
Yellow Channel	E-Yellow Channel	전자서류(e-document) 세관 제출
	Paper-Yellow Channel	종이서류 세관 제출
Red Channel		종이서류 제출 및 세관물품검사

* 출처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조세연구원)

② 수출통관절차

베트남의 수출통관절차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① 선적일정확인 → ② 서류준비 → ③ e-customs 신청, 세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신청번호확인 → ④ 면장신청 및 승인 → ⑤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⑥ 컨테이너 CY 이송 → ⑦ 선적 전 검사 → ⑧ 면장과 Booking Note를 세관에 신고 → ⑨ 통관종료 후 선적 → ⑩ 선적 후 세관 최종승인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수출신고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세서이며 필요 시에는 수출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서를 출력하여 수출항구에서 세관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출세 납부대상 품목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 납부 유예·환급·보세제도

베트남 수출입 세법(제11조2항)에 의해, 세금연체 또는 이로 인한 벌금 없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현지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신고일로부터 275일 동안 관세징수를 유예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데 동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자가

당해 원부자재가 수출용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시에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한 후 가공·수출하고, 275일 이내에 해당금액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시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정산서, 대금결제확인 서류이며 환급대상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로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의 제척기간은 당초 수출목적으로 신고된 경우는 무제한이며, 당초 내수 목적으로 신고된 경우는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은 보세공장과 보세운송제도는 없으나 전국 276개의 공업구(Khu Cong Nghiep, Industrial Zone) 및 76개의 수출가공구(Khu Che Xuat, Export Processing Zone)에서 관세유예제도와 구역외 임가공을 허용하고 있어 보세공장제도를 대신하고 있다.

04.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14.12 베트남 재정부(MOF)는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 부패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①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하고 있다.

②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 현지의 통관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아갈 때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겪을 애로사항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베트남 통관단계별 유의사항〉

단계	유의 사항
1. 수입신고 전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무역부(MOIT)에서 정하는 수입자동허가(AIL) 대상 품목은 수입신고 이전, 물품의 하역 전, 산업무역부에서 허가를 획득해야 함 • 일부 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베트남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 FTA 세율 적용 희망 시, 한국에서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함
2. 수입신고 및 세관심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별로 업무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 제품에 대하여 다른 관 세율을 적용 받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관세총국과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통관이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음 •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 수입신고에 전문성이 다소 감소하는 경우가 있음 • 전산시스템으로 수입신고 후 추가적으로 서류도 제출해야 함 • 세관통관시스템상으로 통관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세관 방문 등으로 인해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 기계류 HS 분류가 우리나라에 비해 자세하지 않아 품목분류가 어려움
3. 면세 등 특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가 적용되는 ‘투자 목적의 고정 자산인 공장 설비’ 기준 판단에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면세 신청에 있어 정형화된 면세신청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 샘플과 광고 및 홍보 물품도 관세 납부의 대상임
4. 수입신고 수리 이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이후 물품은 관세법령 이외 현지의 내국 법령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 • 특정 처분이 추후 일방적으로 변경·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5. 수출 및 환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여 수입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정해진 기간보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자금 계획에 반영,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음

* 출처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 조세연구원)